

본 정관은 1974년에 채택되어 2017년 9월 18일에 개정되었다.

제1장

1 정관의 채택

본 정관의 1장 및 2장에 의거하여 협회와 그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한다.

2 명칭

본 협회는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UK, 이후 "협회")라 칭한다.

3 협회의 목적 (이후 "목적")

의학 및 관련 학문을 포함하는 스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부문에서의 교육을 증진하여 공익에 기여한다.

4 수익 및 자산의 활용

4.1 협회의 수익과 자산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곳에만 활용한다.

4.2 협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지출에 한해 이사는 협회의 자산을 급여로 지급 받거나 지출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청구 시, 이를 증빙할 영수증과 함께 지출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는 간략한 보고서를 갖추어 이사 2인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4.3 어떤 방식으로든 협회의 수익과 자산을 배당금이나 수익금 형태로 협회 회원 누구에게도 지급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예외사항은 있다.

(a) 협회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원에게는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해줄 수 있다.

(b) 협회 이사의 경우

(i) 다른 회원 혹은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ii) 수혜자의 자격으로 협회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 조항의 세부 규정인 4.6항을 준수하고 협회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과 동등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c)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나 직무태만, 배임 등을 저지른 이사나 임원에게 내려질 법적 책임에 대비해 손해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다음의 사항은 제외된다.

- (i) 벌금
- (ii) 이사나 임원이 저지른 사기나 부정행위, 미필적 고의,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시 변호에 실패한 경우의 비용
- (iii) 이사나 임원이 협회의 이익에 저해되는 행동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거나, 자신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에 저해되는지 신경 쓰지 않는 바람에 협회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

4.4 이사나 회원 자격만으로는 급여를 지급 받거나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4.5 이사에게 허용되는 조건

- (a) 재화나 용역, 토지 지분 등을 협회에 판매할 수 있다.
- (b) 협회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c)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회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d) 보상 받을 자의 상황이 4.3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 (e) 4.3 조항에서 이러한 보상을 허용한다. 혹은
- (f) 4.6 조항에 근거하여 이사가 보상을 승인한다.

4.6 (a) 4.3 조항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전적 보상을 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이사가 충족해야 한다.

- (i)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안서 형태로 공표한다.
- (ii) 이러한 제안이 논의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논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iii) 회의 참석자의 정족수 여부를 판단할 때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iv) 제안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b) 4.5 조항에서 허용한 금전적 보상을 이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 보다는 이사와 계약하거나 이사를 고용하는 것이 협회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이들이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사와 계약하거나 이사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크지 따져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가 제공하던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c) 이러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대다수의 이사들로 구성된 협회 내 조직의 경우, 4.5 조항의 (a)에서 (c)에 해당하는 거래만을 허용한다.
- (d) 이사회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사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한 의결은 무효가 되며 이사는 협회로부터 받은 보상 금액을 되갚아야 한다.

4.7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 (개인의 금전적 이익 포함)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사회 논의 과정에는 해당 이사가 참여해서는 안 되며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4.8 제4조에서 "이사"라 함은 이사회 회원을 포함하여 이사와 연관된 사람이나 단체 모두를 일컫는다.

5 협회의 해체

5.1 회원이 협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사는 협회 이사의 자격을 유지하며 본 조항에 의거하여 협회의 업무를 마무리 지을 의무가 있다.

5.2 협회의 모든 자산을 수거하고 협회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비한다.

5.3 남아 있는 자산이나 현금을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a) 목적 달성에 직접 활용한다.
- (b) 본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지닌 자선단체에 양도한다.
- (c) 잉글랜드 웨일스 자선사업 감독 위원회 (이후 "위원회")가 사전에 서면 승인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5.4 회원은 협회를 해체하는 의결을 거치기 전이나 그와 같은 시기에, 이사가 협회의 잔여 부동산이나 자산을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상기한 4.3 조항의 (a)에서 (c)까지의 내용에 부합한다면 해당 의결을 준수한다.

5.5 어떤 경우에도 협회의 순자산을 회원에게 지급하거나 배분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자선단체로 성립되는 회원의 경우 제외).

5.6 이사는 협회가 해체되었음을 위원회에 즉각 통보한다. 협회가 해체되기 전까지의 회계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자료를 위원회에게 보낼 의무가 있다면, 협회의 최종 회계자료를 보낸다.

6 개정안

6.1 본 정관 제1장에 명시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개정할 수 있다.

- (a) 어떤 개정안도 협회가 법률상 자선단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효과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
- (b) 협회의 회원이나 기부자의 상식적인 이해 수준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 (c)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4조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
- (d) 본 정관 제1장에 명시된 조항의 개정안은 총회 출석 회원 (이사, 이사회 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통과시킨다.

6.2 본 정관 제2장에 명시된 조항의 개정안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의결로 통과시킨다.

6.3 정관을 개정하는 의결안이 통과된 후 21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본을 전달한다.

제2장

7 회원 자격

협회의 목적을 공유하는 자라면 누구나 연회비 납부 후 회원이 될 수 있다.

7.1 회원의 역할

- (a) 협회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
- (b) 협회 이사를 위한 자문, 지원, 지도, 정보 및 컨설팅 제공
- (c)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와 동등한 의결권과 권한 보유

7.2 회원 자격 취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a)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 회원의 경우 해당 단체가 없어진 상황
- (b)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협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 제명을 위한 의결 조건:
 - 이사회가 소집되기 최소 21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이사회를 통해 의결이 이루어질 것을 알리고 의결 사유를 설명한다.

- 해당 회원 또는, 원하는 경우, 회원의 대리인 (협회 회원일 필요는 없음)이 회의에서 정식으로 항의할 기회를 준다.

8 총회

- 8.1 협회는 본 정관 채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한다.
- 8.2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되, 전년도 총회와 차기 총회 사이의 공백이 15개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 8.3 정기총회를 제외한 모든 총회를 특별총회라 칭한다.
- 8.4 이사와 회원 모두 어느 때건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8.5 회원 (이사회 회원 포함) 5인 혹은 전체 회원 중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특별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총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무엇인지 요청서에 명시한다. 소집 요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못한 경우, 회원이 특별총회를 직접 소집하되 본 정관의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

9 소집통보

- 9.1 협회의 총회 소집통보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9.2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이 주어지는 회원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이 보다 더 빠른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9.3 총회 소집통보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는 물론 소집 목적을 기재한다.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소집통보에 기재한다.
- 9.4 회원과 이사 전원에게 소집통보서를 전달한다.

10 정족수

- 10.1 정족수가 참석하지 않은 총회에서는 어떤 사안도 처리할 수 없다.
- 10.2 정족수 성립 요건:
 - (a)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해 의결권이 있는 회원 3인", 혹은
 - (b) "전체 회원 수 3분의 1"의 두 가지 상황 중
인원수가 더 많은 경우
- 10.3 만일

- (a) 회의 지정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정족수가 출석하지 않거나
- (b) 회의 도중 정족수 성립이 안 되는 경우

회의를 중단하고 이사와 회원이 새 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10.4 이사는 회의를 재소집하되, 회의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 전에 전달한다.
- 10.5 재소집된 회의 지정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정족수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 회원을 회의 정족수로 간주한다.

11 회장

- 11.1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총회 의장직을 맡는다.
- 11.2 의장직 자체가 없거나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 11.3 단 한 명의 이사만 출석하고 직위를 맡을 의향이 있다면, 해당 이사가 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 11.4 회의 지정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어떤 이사도 출석하지 않고 회의 의장직을 맡을 의향도 없다면, 출석 회원 중 의결권이 있는 자가 회의 의장을 결정한다.
- 11.5 회장이 사고를 당하거나 부재 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 부재로 인한 공백을 메운다.

12 휴회

- 12.1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휴회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 12.2 의결안에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의 의장직을 맡은 자가 회의를 재소집할 일시와 장소를 결정한다.
- 12.3 회의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회의 도중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사안을 제외하고, 어떤 사안도 휴회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
- 12.4 회원 의결을 통해 회의가 중단된 지 7일이 지난 경우, 최소 7일 전에 회의 재소집 일시와 장소가 담긴 소집통보서를 전달한다.

13 의결

- 13.1 이사와 회원 모두 1인 1회 의결권이 주어지는데, 찬반 수가 같을 때는 회의 의장직을 맡은 자에게 기존의 의결권 외에 결정권도 주어진다.

13.2 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회원 (단체 회원의 경우 그 대리인) 모두가 서명한 서면 의결안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러한 의결안은 1인 이상의 회원 혹은 이들의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서명한 다수의 문서로 구성될 수 있다.

14 임원과 이사

14.1 본 정관에 의거하여 선출 혹은 임명된 임원과 기타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분과가 협회 및 그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임원의 경우에만 협회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본 정관에서는 이들을 **이사**로 통칭한다.

14.2 협회의 임원 구성

(a) 회장

(b) 재무이사

14.3 이사직은 협회의 회원이나, 단체 회원의 경우, 지정 대리인이 맡을 수 있다.

14.4 17조에 근거하여 활동 자격이 없는 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14.5 이사의 수는, 협회의 총회 의결을 통해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최소 3인이어야 하나, 인원수 제한은 없다.

14.6 협회의 초대 이사 (임원 포함)는 본 정관을 채택하는 회의에서 이사와 임원으로 선출된 자에 해당한다.

14.7 이사는 이사회에 나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14.8 이사는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할 책임이 있다.

15 이사의 선임

15.1 협회는 총회를 통해 임원과 이사를 선출한다.

15.2 이사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임원으로 활동할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다만, 15.4(b)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5.3 이사는 임명된 후 열리는 정기총회 직후 사임할 수 있으나, 동일한 정기총회에서 재임 자격이 부여된다.

15.4 협회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일반 이사', '명예 이사'로 구성하며, 본 정관에서는 최소 혹은 최대 수로 이사의 정수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 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는 16인으로 하며 이들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회장, 감사, 전문분과대표 (6인), 지부대표 (1인), 부회장 (3인), 학술이사, 재무이사, 정보이사, 홍보이사가 이들에 해당한다. 당연직 이사의 범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하다.
- 일반 이사는 재적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임한다.
- 명예 이사는 협회의 전문 분야를 자문해줄 수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명예 이사는 의사결정 시 다른 이사들과 단체 행동을 취한다.
- 일반 이사와 명예 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추천서 2부
 - 이력서 1부

15.5 이사의 임기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무 수행 기간으로 한다.
- 일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일반 이사는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사유 없이 이사회 모임 2회 연속 불참 시 이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명예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6 이사의 권한

16.1 협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협회의 목적 (그 외 다른 목적은 해당하지 않음) 달성을 위해 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 받는다.

- (a) 모금 활동을 하되,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영구적인 거래 활동을 벌여서는 안되며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b) 구매, 임차, 교환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후 이의 사용을 위해 관리하고 장비를 갖춘다.
- (c) 협회가 보유한 자산의 전체 혹은 일부를 매각, 임차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이러한 권한 행사 시, 자선단체법 2011의 117-122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d) 협회가 보유한 자산의 전체 혹은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빌린 금액을 상환한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자선단체법 2011의 124-126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e) 다른 자선단체와 자발적 기구, 규제 당국과 협조하고 이들과 정보 교류는 물론 조언도 구한다.
- (f) 협회 목적에 해당하는 자선단체 성향의 단체나 협회, 기관 등을 설립하거나 이들을 지원한다.
- (g) 수익금을 향후 지출을 위한 예비금으로 비축해 놓되, 예비금에 관한 정책을 준수한다.
- (h)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다.
- (i)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자금 관리를 위임하되, 신탁관리자법 2000에 의거하여 신탁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 (j)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16.2 어떤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특별 의결을 거치더라도, 이사의 이전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소급 효과를 지닐 수는 없다.

16.3 정족수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관련성 있는 사안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7 이사의 직위 상실 및 제명

이사의 직위 상실 조건:

17.1 자선단체법 2011의 178 및 179 조항 (혹은 법률 재제정이나 해당 조항의 개정)에 근거하여 이사의 직위가 상실될 수 있다.

17.2 회원 자격 상실

17.3 정신병이나 질환, 부상 등의 이유로 인해 자신이 맡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

17.4 이사직 사임을 협회에 표명한 경우 (사임이 효력을 발휘할 무렵, 최소 2인의 이사가 직무를 맡고 있어야 함)

17.5 이사회 허락 없이 6개월 연속 모든 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18 이사회 의사진행

18.1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의사진행 과정을 조절하되, 본 정관의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

- 18.2 이사라면 누구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8.3 회의에서 제기할 질의는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 18.4 찬반 수가 같을 때는 회의 의장직을 맡은 자에게 두번째 의결권 혹은 결정권이 주어진다.
- 18.5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정족수 미달인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 18.6 특정 이사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결정할 때 해당 이사는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18.7 참석 이사의 수가 정족수 미달일 때 영구 이사는 정족수를 채우거나 총회를 소집하는 목적에 한해 활동할 수 있다.
- 18.8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는다.
- 18.9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8.10 회장이 회의를 주재할 의향이 없거나 회의 지정 시간으로부터 10분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 이사 중 1인을 회의 의장자로 선임한다.
- 18.11 이사회 의장직을 맡도록 선임된 자는 본 정관에 명시되거나 서면으로 위임된 것 외의 역할이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18.12 이사회나 전문분과의 소집통보를 받을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이사가 서명한 서면 의결은 적절한 방식으로 소집하여 진행한 이사회나 전문분과에서 통과시킨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18.13 서면 의결은 1인 이상의 이사가 의결 문구가 담긴 형태에 개별적으로 서명한 다수의 문서를 집결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19 위임

- 19.1 이사의 권한이나 역할을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전문분과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 조건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 19.2 위임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a) 위임되는 전문분과만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b) 사전 합의한 예산에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회를 대표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 19.3 이사는 위임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9.4 전문분과의 행위와 의사진행에 관한 내용 전체를 이사에게 즉각 보고한다.

20 의사진행의 예외사항

20.1 이사회나 전문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이사에 관한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다만, 20.2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a) 직위를 상실한 이사
- (b) 본 정관에 따라, 이전에 사임했거나 직위를 그만 두어야 하는 이사
- (c)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거나,
혹은
- (d) 해당 이사에 대한 의결권이 없고,
- (e) 해당 이사가 정족수 인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정족수에 달하는 회의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

20.2 본 조항의 20.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나 전문분과에서의 의결이 무효가 되었다면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었을 수 있는 이사에게 보상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3 협회 회원이나 수혜자를 실질적으로 호도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 (a) 이사, 그리고
- (b) 전문분과,
- (c) 총회에 참석한 협회

의 의결이나 행위를, 이어나 회원에게 소집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회의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

21 회의록

이사는 다음의 모든 항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21.1 이사에 의한 임원과 이사의 임명

21.2 협회 회의 시 의사진행

21.3 이사회 및 전문분과 회의 내용

- (a)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성명

- (b)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사항
- (c) 필요 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

22 연차 보고서, 수익, 회계자료

22.1 협회 이사는 자선단체법 2011에 근거하여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 (a) 협회의 회계 기록을 보관
- (b) 협회의 연차 회계보고서 준비
- (c) 회계보고서를 협회에 제출
- (d) 연차 보고서의 준비 및 위원회 제출

22.2 타 기관이 준비한 보고서 조항에 따라 회계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가 발행한 주장기준서 (SORP)의 조항에 근거하여 회계자료를 준비한다.

23 등기사항

이사는 자선단체 중앙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협회의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24 자산

24.1 이사는

- (a) 협회가 보유하거나 협회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선단체 공식 관리국에 귀속되지 않은 모든 토지 소유권, 그리고
- (b) 협회가 보유하거나 협회를 대신하여 진행되는 모든 투자 소유권

을 관리자 역할을 맡을 법인 혹은 3인 이상의 개인을 지주 이사로 선임하여 이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24.2 지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가 정한 법률 조항에만 의거하여 이들이 활동하고 이러한 활동 시, 이어나 협회 회원이 저지른 행위와 체납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24.3 이러한 지주 이사의 선임은 어느 때건 취소할 수 있다.

25 관리 및 보험

이사는 협회가 보유한 모든 건물 (임차인이 관리 및 보험의 의무를 지니는 건물은 제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물론 흔한 위험으로부터 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험에 들어야 한다. 공공책임과 고용주책임을 포함하는 보험도 적절하게 들어야 한다.

26 소집통보

26.1 정관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인에게 전달하거나 개인이 전달하는 소집통보의 요건

- (a)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 (b)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전달한다.

26.2 회원에게 소집통보를 전달할 경우

- (a)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 (b) 우편료가 지불된 봉투에 담아 회원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혹은
- (c) 회원의 주소지에 남겨놓는다. 또한
- (d)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26.3 협회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영국 외의 우편주소로만 등록한 회원의 경우 협회로부터 소집통보를 받을 수 없다.

26.4 협회가 진행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회원은 해당 회의에 관한 소집통보는 물론 회의가 소집된 목적도 전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26.5
- (a) 소집통보가 담긴 봉투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고 우편료를 지불한 후 발송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해당 소집통보가 전달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 (b) 소집통보가 담긴 전자우편에 주소를 제대로 입력한 후 전송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해당 소집통보가 전달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 (c) 소집통보가 담긴 봉투가 발송된 후 48시간이 지나거나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된 후 48시간이 지나면 소집통보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7 규칙

27.1 이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나 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27.2 세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만 한정시키지 않는다.

- (a) 회원의 협회 가입 (단체 회원 가입 포함)과 회원의 권한 및 특혜는 물론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구독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지불금
- (b) 협회 회원이 다른 회원이나 협회 직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

- (c) 협회 부지의 전체 혹은 일부를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떼어 놓기
- (d) 총회 및 이사회 절차 (본 정관에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e) 협회의 기록을 보관하고 이의 진위 여부를 입증 (본 조항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협회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그 기록에 이사가 서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서명의 보관 방법을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27.3 협회는 총회를 통해 규칙이나 세칙을 변경, 추가, 폐기할 수 있다.

27.4 이사는 협회 회원에게 규칙과 세칙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7.5 이러한 규칙이나 세칙은 협회의 모든 회원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어떤 규칙이나 세칙도 본 정관에 포함된 내용과 상충되거나 정관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28 분쟁

본 정관에 따라 회원이 취한 행동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회원간 분쟁이 발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먼저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